

서울학생인권조례안 마련을 위한 내부 집중 워크숍

□ 때: 2010년 7월 26일(월) 7시

□ 곳: 전교조 서울지부

< 차 례 >

1. 조례에 대한 법적 검토 - 윤지영
2. 경기도학생인권조례안 해설과 분석 - 배경내
3. 각계 검토 의견 수렴
 - 친구사이/ 종교자유정책연구원/공감/서울장애인교육권연대/
 - 그 밖의 참여자 모두

[자료 1]

주민발의¹⁾ 형태의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관한 해설

- 작성 : 윤지영(공익변호사그룹 공감)²⁾

■ 조례의 법적 위상과 쟁점에 대한 이해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학생인권조례가 법령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청구를 각하할 수 있는가

가. 관련 법령

지방자치법 제15조 제2항 제1호에 따르면 법령을 위반한 사항은 조례 제정 청구 대상에 포함될 수 없고, 같은 조 제7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가 제2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한 때에는 청구를 각하할 수 있다.

나. 사례

청구인은 2005. 12. 6. 은평구 주민 9,551명의 서명을 받아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에게 ‘서울특별시 은평구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청구를 하였는데, 은평구청장은 2006. 1. 17.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법령이나 상급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위반하여 제정될 수 없으며, ‘서울특별시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상태에 있어 서울특별시 조례 제정 추이 등을 지켜보면서 제정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위 조례제정청구를 각하하였고, 청구인은 위 각하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06. 7. 21. 기각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은평구청장을 상대로 위 각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서울행정법원 2006구합37738), 그 소송계속중 위 각하처분의 근거가 된 구 지방자치법 제13조의3 제1항 제1호 및 제6항이 권력분립·국민주권의 원리, 명확성원칙 등에 반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서울행정법원 2007아164) 2007. 7. 4. 법원이 위 신청을 기각하자, 2007. 8. 1. 위 법률조항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다. 헌법재판소의 결정

위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117조 제1항의 취지에 따라 조례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되어야 하며, 이것은 주민이 자치입법에 직접 관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고,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이러한 내용을 확인한 것에 불과하다. 한편, 상위법에 위반한 조례안이 일정한 절차를 거쳐 조례로 제정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사후적 사법심사를 통해 무효화시키는 것은 지방행정의 낭비 및 회복하기 어려운 법질서의 혼란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들과 같은 사전차단장치를 둔 것이 입법자의 자의적인 범형성권의 행사로서 지방자치제도

1) 지방자치법상 정식 명칭은 ‘조례 제정 청구’이나 조례 제정에 주민이 참여한다는 뜻을 살려 ‘주민발의’라는 용어를 사용

2) 조례 제정 절차, 조례안의 수정 가능성에 관한 리서치는 임지희 연세대학교 로스쿨생이 맡았습니다.

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라. 결론

청구를 각하할 수 있다.

2. 학생인권조례는 교육의 자주성³⁾ 및 교육의 자유에 반하는가.

가. 문제 제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체벌 금지, 두발 자유, 교복 강제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학생인권조례가 헌법 기타 법령이 정한 학교 교육의 자주성을 침해하며, 학생들을 자유롭게 가르칠 교사의 교육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문제 제기하였다. 교총의 주장처럼 학생인권조례가 교육의 자주성, 교육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면 조례 제정 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조례가 법령에 반하는 것을 이유로 청구를 각하할 수 있다. 설사 청구가 각하되지 않더라도 조례 제정 후 학교법인 등은 학생인권조례가 법령에 반함을 이유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법원은 학생인권조례가 효력이 없다고 판결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학생인권조례가 법령이 정한 학교 교육의 자주성 및 교육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나. 관련 법령

1) 대한민국 헌법

제31조 ④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⑥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2) 교육기본법

제9조 (학교교육)

②학교는 공공성을 가지며, 학생의 교육 외에 학술 및 문화적 전통의 유지·발전과 주민의 평생교육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 (교원)

①학교교육에서 교원(敎員)의 전문성은 존중되며, 교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는 우대되고 그 신분은 보장된다.

②교원은 교육자로서 갖추어야 할 품성과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교원은 교육자로서의 윤리의식을 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생에게 학습윤리를 지도하고 지식을 습득하게 하며, 학생 개개인의 적성을 계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교원은 특정한 정당이나 정파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하거나 선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3) 아래 기재하는 바와 같이 대학의 경우에는 자율성을 가지지만 초중등학교의 경우에는 공교육 원칙에 따라 대학의 자율성과는 다른 차원의 교육의 자주성이 인정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와 사회교육시설을 지도 • 감독한다.

3) 초 • 중등교육법

제8조 (학교규칙)

① 학교의 장(학교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당해 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도 • 감독기관(국립학교인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공 • 사립학교인 경우에는 교육감을 말한다. 이하 "관할청"이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을 제정할 수 있다.

제18조 (학생의 징계)

①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법령 및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생을 징계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 다만,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을 퇴학시킬 수 없다.

제18조의4 (학생의 인권보장)

학교의 설립자 • 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 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다. 교육의 자주성의 의미

우리 헌법은 교육의 자주성을 명시하고 있다. 교육의 자주성이라 함은 교육내용과 교육기구가 교육자에 의하여 자주적으로 결정되고 행정권력에 의한 교육통제가 배제되어야 한다는 것이며, 국가권력으로부터 교육의 독립을 그 핵심으로 한다. 그렇다고 교육의 자주성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감독을 전적으로 배제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오늘날의 교육은 공교육을 중심으로 하며 공교육은 국가의 감독을 받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국가적 감독이 합리적이고 필요한 범위를 넘어 교육의 자주성을 침해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된다.

라. 교육의 자유의 의미

교사가 누리는 교육의 자유란 교육내용이나 교육방법 등에 관해 국가나 외부의 간섭이나 개입 없이 자주적으로 결정하는 자유를 의미한다. 교사의 교육의 자유에 대해서는 헌법에 명시적 규정이 없으나, 이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수학적권(헌법 제31조 제1항의 교육을 받을 권리)과 교사의 수업의 자유는 다같이 보호되어야 하겠지만 그 중에서도 국민의 수학적권이 더 우선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헌법 제3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데, 그 권리는 통상 국가에 의한 교육조건 개선 • 정비와 교육기회의 균등한 보장을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이해되고 있다. 수학적권의 보장은 국민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하고(헌법 제10조 전문)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는데(헌법 제34조 제1항) 필수적인 조건이자 대전제이며, 헌법 제31조 제2항 내지 제6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 의무교육의 무상, 교육의 자주성 • 전문성 • 중립성보장, 평생교육진흥, 교육제도 및 교육재정, 교원지위 법률주의 등은 국민의 수학적권의 효율적인 보장을 위한 규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학교교육에 있어서 교사의 가르치는 권리를 수업권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자연법적으로는 학부모에게 속하는 자녀에 대한 교육권을 신탁받은 것이고, 실정법상으로는 공교육의 책임이 있는 국가의 위임에 의한 것이다. 그것은 교사의 지위에서 생기는 학생에 대한 일차적인 교육상의 직무권한(직권)이지만, 학생의 수학적권의 실현을 위하여 인정되는 것으로서 양자는 상호협력관계에 있다고 하겠으나, 수학적권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의 하나로서 보다 존중되어야 하며, 그것이 왜곡되지 않고 올바르게 행사될 수 있게 하기 위한 범위 내에서는 수업권도 어느 정도의 범위 내에서 제약을 받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헌법재판소 1992.

11. 12. 선고 헌마88 결정)“고 판시한 바 있다.

마. 결론

공교육의 원칙상 학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감독 하에 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자주성을 가지며, 학교에서 정하는 학칙 역시 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또한 교사가 누리는 교육의 자유 역시 학생들이 가지는 교육 받을 권리를 위해 어느 정도 제한될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법령의 하나인 조례로써 체벌 금지, 두발 자유, 교복 강제 금지에 대해 정하는 것은 허용되며, 오히려 학교는 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학칙을 제정해야 할 의무를, 교사는 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물론 학생인권조례는 이보다 상위법인 헌법과 법률의 내용에 반해서는 안되나 학생인권조례가 담고 있는 내용은 헌법, 교육기본법, 아동인권협약 등이 정하고 있는 제규정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3. 몇 명으로부터 서명을 받아야 하는가

가. 관련 법령

지방자치법 제15조 제1항에서 이에 관해 정하고 있다. 2005년 법개정으로 시·도 및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 있어서는 19세 이상의 주민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70분의 1 이하,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1 이상 20분의 1 이하의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19세 이상의 주민 수 이상의 연서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례의 제정을 청구하게 되어 있다.

나. 서울특별시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청구요건 공고

19세 이상 주민 총수	공직선거법상『선거권이 없는자』제외			연서하여야 할 19세 이상 주민수
	19세 이상이고 해당 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	19세 이상이고 해당 자치단체의 국내 거소 신고인 명부에 올라 있는 국민	19세 이상이고 영주 체류자격 취득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해당 자치단체의 외국인 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8,188,431	8,154,515	30,544	3,372	81,885

다. 결론

2010. 1. 8. 현재 19세 이상 주민 81,885명

4. 학생인권조례에 벌칙을 정할 수 있는가.

가. 관련 법령

지방자치법 제27조 (조례위반에 대한 과태료)

- ①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조례로써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관할 구역 안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제22조 (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령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나. 판례

구 지방자치법(1994.3.16. 법률 제47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가 조례에 의하여 3월 이하의 징역 등 형벌을 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나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20조는 형벌권을 삭제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써 조례 위반에 대하여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만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 위반에 형벌을 가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례안 규정들은 현행 지방자치법 제20조에 위반되고, 적법한 법률의 위임 없이 제정된 것이 되어 지방자치법 제15조 단서에 위반되고, 나아가 죄형법정주의를 선언한 헌법 제12조 제1항에도 위반된다(대법원 1995. 6.30. 선고 93추 83 판결).

다. 결론

과태료는 정할 수 있으나 벌칙은 정할 수 없다.

5. 서명 과정에서 조례안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가?

가. 관련 법령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 따르면 조례 청구시 제정안을 제출하고, 제13조에 따르면 제정안 제출 후 제정안을 첨부하여 서명을 받으며, 제15조 제1항에 따르면 서명 후 제정안은 제출하지 않고 청구인명부만 제출한다.

나. 사례

1) 목포시 건축물 장애인 편의시설 사전점검 조례안 수정 및 제정과정 (2003)

목포시 건축물 장애인 편의시설 사전점검 조례안은 2003년 4월 9일 '(가칭)목포시 장애인편의시설 사전 모니터 의무화에 관한 조례'라는 이름으로 처음 조례제정의 추진이 제안되어 조례 초안이 작성된 이후, 3번의 수정과정을 거쳐 최종 주민 발의 조례안으로 확정됐다. 처음 조례 초안이 작성

된 것은 2003년 4월 14일 '목포시 건축물의 건축허가 등에 있어서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 점검에 관한 조례(초안)'이었는데,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 조례 제정 청구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간담회에서 처음 제출돼 논의되었다. 그리고 이 간담회를 통해 나온 일부 의견을 반영한 첫 번째 수정안(제1차 수정안)은 2003년 5월 19일 조례관련 이해 당사자들을 모두 초청해 개최된 '목포시 건축물의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사항의 사전 점검에 관한 조례'의 제정방향 토론회에 제출돼 논의됐다. 그리고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일부 보완한 제2차 수정안이 2003년 5월 20일 시민사회단체 2차 간담회에 제출돼 논의되었고, 이 논의에서 또 일부 조례 내용이 수정돼 2003년 5월 21일 주민 발의를 위한 최종 조례안이자, 제3차 수정안인 목포시 건축물의 허가 등에 있어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이 작성, 확정되었다. 이후 2003년 5월 23일 목포시에 조례제정을 청구하였고 2003년 6월 3일부터 주민들을 상대로 가두서명운동에 돌입하였다.

2) 과천시 영유아 및 아동보육조례 개정과정 (2001년 12월)

2001년 9월 주민들의 주도하에 시작된 조례개정운동은 길거리 서명에 나서기 전 조례안이 확정되었다.

다. 결론

수정할 수 없다.

6.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의회는 제정 청구된 조례를 수정할 수 있는가

가. 관련 법령

지방자치법 제12조 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7항에 따라 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조례의 제정안·개정안 또는 폐지안을 지방의회에 부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8조 (지방의회에 부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5조제9항에 따른 조례의 제정·개정·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조례의 제정·개정·폐지안에 그 의견을 첨부하여 지방의회의 회의에 부칠 수 있다.

나. 사례

1) 목포시 건축물 장애인 편의시설 사전점검 조례안 수정 및 제정과정 (2003)

제3차에 걸친 조례안 수정을 통해 최종확정된 주민 발의 조례안은 이후 시의회 심의과정을 통해 1차례 수정 과정을 거쳐 본의회에서 조례로 확정되었다. 수정된 내용은 5개 조항에 걸쳐 이루어졌는데, 이러한 수정은 현행 상위법과의 충돌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고육지책의 일환으로 문구에 대한 조정과정을 거쳤다는 점에서 부득이한 것이었다. 즉, 상위법과의 저촉되는 부분과 일부 이해행위자의 의견을 수용한 점 말고는 거의 원안의 취지 수준에서 통과되었다.

2) 충남 청양군 학교급식조례 제정과정 (2003)

조례안의 청구수리 이후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와 여러차례의 대립이 있었고 이때마다 주민들의 조직적인 행동으로 이를 저지할 수 있었으며, 조례 수정안을 통과하겠다는 움직임이 있을 때마다 의사당 앞에서 시위를 함으로써 약간의 행정적 용어를 수정했을 뿐 중요한 원안 내용 그대로 제정할 수 있었다.

다. 결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안에 대해 의견은 제출할 수 있으나 조례안 자체를 수정할 수 없다. 반면 조례의 제정 권한은 의회에 있으므로 의회에서 조례안을 수정하여 가결할 수 있다. 그러나 사례에서 본 바와 같이,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제정 청구된 조례안은 그대로 가결될 가능성이 높다.

7. 학생인권조례에 옴부즈맨 제도를 들 수 있는가?

가. 관련 법령

지방자치법 제12조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제1항에 따른 청구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3.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것에 관한 사항이나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

나. 판례

-[1] 합의제 행정기관인 옴부즈맨(Ombudsman)⁴⁾을 집행기관의 장인 도지사 소속으로 설치하는 데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10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면 되는 것이지 헌법이나 다른 법령상으로 별도의 설치근거가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다.

[2]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1조는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10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합의제 행정기관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따로 법령으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조직을 통제하기 위한 내부 절차규정에 불과할 뿐 지방의회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규정으로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합의제 행정기관의 설치에 관한 내무부장관의 승인은 조례의 시행단계에서 취하여야 할 절차로서 그 승인 여부가 합의제 행정기관의 설치를 규정한 조례안의 의결의 효력을 좌우하는 전제조건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3]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중 독립성을 갖는 옴부즈맨이라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하여금 지방실정에 맞게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주민고충을 처리하고 지방행정에 대한 감시·통제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옴부즈맨제도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전국적인 행정 감시·통제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제도 또는 독립성이 약한 기관에 의한 자체 행정 감시·통제제도와는 다른 기능과 효율성을 가지며, 나아가 그 옴부즈맨제도가 위와 같은 다른 감시·통제제도의 이용을 배제하거나 그 전치조건으로 옴부즈맨에 의한 고충처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오히려 행정심판, 소송, 헌법재판소의 심판, 헌법소원, 감사원의 심사청구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불복·규제절차가 진행중인 사항을 옴부즈맨의 관할에서 배제하고 있다면 이는 주민으로 하여금 그와 같은 다른 불복·규제제도와 동시에 또는 선택적으로 지방행정에 대한 불복·규제제도를 추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독자적인 기능과 효율성을 가진다고 본 사례.

[4]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수를 정하는 내용의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3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4조 제1항과 제21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 제3조 제1항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무원의 총정원의 범위 내에서 정원관리기관별로 지방공무원의 정수를 정하는 것일 경우에 한하여 유효하고, 내

4) 충청북도청소리옴부즈만조례안(이하 '이 사건 조례안'이라 한다)은 충청도민의 고충(집행기관의 위법·부당한 업무집행과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받게 되는 권리침해 등의 고충)을 접수처리하고 집행기관에 대하여 시정조치나 제도개선을 권고·의견표명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청소리옴부즈만(이하 '옴부즈맨'이라 한다)이라는 행정기관을 설치하는 것을 그 주요골자로 하는 것

무부장관의 사전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총정원을 늘리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는 위 법령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7] 집행기관의 하나인 읍부즈맨에 4급 이상의 지방공무원 1명을 상임 읍부즈맨으로 임명하도록 하고 있는 읍부즈맨조례안에 대하여, 그 조례안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현 정원이 지방자치법령상의 산식에 의한 총정원을 초과하고 있는 상태에서 의결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정원을 결과적으로 늘리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는 이유로, 그 의결시 내무부장관의 사전승인을 얻지 아니하여 무효라고 본 사례(대법원 1997. 4. 11. 선고 96추138 판결)

다. 결론

읍부즈맨 제도 자체는 법령에 반하지 않으나 당해 읍부즈맨이 행정기구인 때에는 여러 가지 제한이 있다. 따라서 학생인권조례에는 법적 절차를 모두 거치는 것을 조건으로 한, 행정기구와는 다른 독자적인 권한을 가진 읍부즈맨 제도를 둘 수 있다.

8. 누구(교육감 또는 서울시장?)에게 조례 제정을 청구해야 하는가?

가. 관련 법령

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 (「지방자치법」과의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설치와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교육감”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로 “자치사무”는 “교육·학예에 관한 자치사무”로, “행정안전부장관”·“주무부장관”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본다.”

제20조 (관장사무)

교육감은 교육·학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5. 학교, 그 밖의 교육기관의 설치·이전 및 폐지에 관한 사항
6.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8. 평생교육, 그 밖의 교육·학예진흥에 관한 사항

2) 지방자치법

제9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5.17 제8435호(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08.1.1]]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라. 노인·아동·심신장애인·청소년 및 부녀(婦女)의 보호와 복지증진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가. 유아원·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운영·지도

나. 판례

“구지방자치법(1994. 3. 16. 법률 제47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9조, 제35조 제1항 제1호, 제135조 제1항, 제2항, 구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1995. 7. 26. 법률 제49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조, 제41조, 구교육법 (1995. 12. 29. 법률 제5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4항 등의 규정들을 종합하면, 공립초등학교는 공공시설로서 그 설치·폐지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인 시·도가 제정하는 조례의 형식으로 정하여야 하고, 그러한 학교의 설치·폐지는 지방의회에 의한 조례의 의결 및 그 공포로써 효력이 발생하여 완결되는 것이며, 구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27조 제1호, 제5호에서 조례안의 작성 및 학교의 설치·폐지에 관한 사항을 교육감의 관장 사무로 규정하고 있더라도 그 규정을 시·도 교육감이 학교의 설치·폐지에 관한 결정 자체를 할 권한이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6. 9.20. 선고 95누7994 판결)

다. 결론

학생인권조례는 교육감에게 청구한다. 그러나 관련 법령 및 판례의 해석에 비추어 본다면 학생인권조례가 청소년인권조례의 성격을 가지는 경우에는 서울시장에게 청구한다. 그러나 그 경계가 분명한 것은 아니다.

<참고 1> 관련 법령 *

가. 지방자치법

제15조 (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

① 19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른 선거권이 없는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6조에서 "19세 이상의 주민"이라 한다)은 시·도와 제175조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서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70분의 1 이하,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1 이상 20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19세 이상의 주민 수 이상의 연서(連署)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9.4.1] [[시행일 2009.10.2]]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국내 거소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국민
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제1항에 따른 청구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09.4.1] [[시행일 2009.10.2]]

1.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2.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부담금의 부과·징수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
3.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것에 관한 사항이나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
 - ③ 지방자치단체의 19세 이상의 주민이 제1항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하려면 청구인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청구인명부에 적어야 하며, 청구인의 대표자는 조례의 제정안·개정안 및 폐지안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 [[시행일 2009.10.2]]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으면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내용을 공표하여야 하며, 청구를 공표한 날부터 10일간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두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 [[시행일 2009.10.2]]
 - ⑤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제4항에 따른 열람기간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9.4.1] [[시행일 2009.10.2]]
 -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제4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심사·결정하되, 그 신청이 이유 있다고 결정한 때에는 청구인명부를 수정하고, 이를 이의신청을 한 자와 제3항에 따른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알려야 하며, 그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결정한 때에는 그 뜻을 즉시 이의신청을 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9.4.1] [[시행일 2009.10.2]]
 -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또는 제5항에 따라 제기된 모든 이의신청에 대하여 제6항에 따른 결정이 끝난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때에는 청구를 수리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를 각하하되, 수리 또는 각하 사실을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9.4.1] [[시행일 2009.10.2]]
 - ⑧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7항에 따라 청구를 각하하려면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09.4.1] [[시행일2009.10.2]]
 - 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7항에 따라 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조례의 제정안·개정안 또는 폐지안을 지방의회에 부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9.4.1] [[시행일 2009.10.2]]
 - ⑩ 제1항에 따른 19세 이상의 주민 총수는 전년도 12월 31일 현재의 주민등록표 및 재외국민국내거소신고표, 외국인등록표에 의하여 산정한다. [개정 2009.4.1] [[시행일 2009.10.2]]
 - ⑪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청구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4.1] [[시행일 2009.10.2]]

<참고 2> 조례제정 청구 절차

가. 절차도

0단계	청구서 작성의 전 단계
	-주민의사 수렴 및 형성과정
1단계	조례안 작성과 청구대표자 선정
	-현행 제도는 조례 제, 개정의 내용을 미리 작성해야 한다. -청구할 대표자를 선정한다.
2단계	청구서 제출 및 대표자증명서 교부
	-청구서를 제출하고 대표자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한다. -지방자치단체는 대표자증명서를 교부한다.
3단계	수임인의 선정 및 신고
	-대표자와 함께 서명을 받을 수 있는 수임인을 선정한다. -이를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고 위임 신고증을 교부받는다.
4단계	서명운동
	-대표자와 수임인은 서명운동을 전개한다. 서명방식은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서명일자/서명, 날인을 반드시 해야 한다. -광역은 6개월, 기초는 3개월간 서명을 받는다.
5 단계	청구인 명부의 제출
	-필요한 숫자 이상의 서명을 받으면 청구인 명부를 제출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공표한다.
6 단계	청구인 명부의 열람 및 청구 수리
	-지방자치단체는 청구인 명부를 비치,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이의신청이 없으면 지방자치단체는 청구의 수리 여부를 결정한다.
7단계	조례(안)의 의회제출
	-단체장은 청구수리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주민발의안을 부의한다. -단체장은 주민발의안에 대하여 의견을 덧붙일 수 있다.

<주민발의제도의 이해와 활용 방안, 김현, 「도시와 빈곤」2006.08(통권81호), p.9>

나. 세부적 내용

- 1단계 : 조례안 작성과 청구대표자 선정

현행 제도상으로는 서명을 받기 전에 먼저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할 내용을 확정해서 조례 제·개정청구를 해야 한다. 따라서 절차를 시작하려면, 우선 제정 또는 개정해야 할 조례의 주요골자와 제·개정이유가 정리되어 있어야 한다. 조례를 제·개정하려고 하는 취지가 조례의 조문 속에 충분히 담기게 하기 위해서 청구인의 대표자는 조례의 제정 및 개폐안을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지방자치법 제15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청구를 하기 전에 미리 청구대표자를 선정해야 한다. 어떤 시민 한 사람이 본인의 생각하는 바에 따라 조례 제·개정청구를 하려고 본인을 대표자로 해서 청구를 하는 경우도 생각해 볼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많은 숫자의 서명을 받아야 하는 조례 제·개정청구를 하려면, 이미 형성되어 있던 단체나 모임차원에서 추진하거나 조례 제·개정의 취지에 공감하는 상당한 숫자의 시민들이 모여 있을 가능성이 많다. 그렇다면, 그 중에서 조례 제·개정청구서에 대표자로 기재할 사람을 뽑아야 한다. 이때, 만약 이미 형성되어 있는 단체나 모임차원에서 조례 제·개정을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단체나 모임의 대표자 명의로 할 필요는 없다. 조례 제·개정운동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대표자로 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2단계 : 청구서 제출 및 대표자증명서 교부

조례 제·개정청구를 하고자 하는 청구인의 대표자는 청구의 취지와 이유 등을 기재한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청구서를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한다. 그리고 청구서 제출 시에 대표자 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은 대표자가 19세 이상의 주민에 해당하는 지를 확인한 후에, 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하고 그 취지를 공표하여야 한다(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 3단계 : 수임인의 선정 및 신고

대표자 증명서를 교부 받고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취지를 공표한 이후에는 곧바로 서명을 시작할 수 있다. 그리고 주민들에게 서명을 요청할 수 있는 기간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공표한 날로부터 시·도(광역지방자치단체)는 6개월, 시·군·자치구는 3개월 이내이다. 따라서 이 기간 내에 서명을 완료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대표자만의 힘으로 많은 숫자의 주민들로부터 서명을 받기는 무리이다. 그래서 대표자로부터 위임을 받아서 주민들로부터 서명을 받을 수 있는 수임인을 선정해서 신고를 할 필요가 있다. 수임인은 그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19세 이상의 주민이면 누구나 될 수 있다. 수임인이 선정되면 대표자는 수임인의 성명 및 위임연월일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은 즉시 위임신고증을 교부해야 한다.

- 4단계 : 서명운동

수임인까지 신고하고 신고증을 교부받으면 서명운동이 본격적으로 전개된다. 서명의 방식은 청구인명부에 19세 이상의 주민이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서명일자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하는 것이다. 서명을 할 때에 청구인 명부는 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읍·면·동별로 작성하고, 시·도의 경우에는 시·군·자치구별로 읍·면·동으로 구분하여 이를 작성하여야 한다.

- 5단계 : 청구인 명부의 제출

대표자는 서명을 받은 주민 숫자가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필요한 숫자 이상으로 된 때에는 서명요청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시·도에 있어서는 10일 이내에, 시·군·자치구에 있어서는 5일 이내에 청구인명부를 제출해야 한다. 청구인 명부가 제출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표자의 성명·주소, 청구취지 및 이유, 연서주민수, 청구인 명부 열람기간·장소 및 이의신청방법 등을 공표하여야 한다.

- 6단계 : 청구인 명부의 열람 및 청구수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구인 명부를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내용을 공표하여야 하며, 공표한 날부터 10일 간 시·도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시·군·자치구별료, 시·군·자치구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읍·면·동별로 청구인 명부 또는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비치하여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이때 청구인 명부의 서명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열람기간 내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또는 모든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이 완료된 경우, 청구의 수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때 해당 조례가 조례 제·개정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구를 수리해야 하고 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구를 각하하는 경우 청구인 대표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7단계 : 조례(안)의 의회제출

지방자치단체장은 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안을 지방의회에 부의하여야 한다. 이때 지방자치단체장은 청구서의 내용에 따라 조례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안에 그 의견을 덧붙여 지방의회에 부의할 수 있다.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 마련을 위한 경기도학생인권조례자문위원회 최종안 해설과 분석

- 작성: 배경내(인권교육센터 '들')

[분석 대상 조례안]

- 조례제정자문위원회는 A안과 B안 두 가지로 최종안 제출. 이 중 B안으로 교육청은 입법발의하였음. 두 안의 차이와 제기됐던 논쟁을 살펴보기 위해 자문위원회 최종안을 분석 자료로 삼음.

[경기도학생인권조례의 기본 철학]

-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연구소 '창', 성공회대인권평화센터는 2007년 국가인권위원회 용역으로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지침서>를 작성한 바 있음. 지침서에서는 유엔아동권리협약 등 각종 국제인권조약과 조약기구들이 제시한 바 있는 학생인권 관련 기준, 유엔회의 결의문, 유니세프 '아동친화적 학교' 가이드라인 등을 종합 검토하면서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10가지 열쇠말'을 뽑아냄. 이 10가지 열쇠말이 경기도학생인권조례의 기본 철학으로 채택됨.

1. 권리의 존엄한 주체로서의 학생

: 모욕과 폭력이 없는 학교 - 학창시절은 인생의 대기실이 아니다.

: 교육의 목적은 아동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권리를 증진하고 지원하며 보호하는 데 있다.



"협약은 아동의 지위를 독립된 인격체이자 인권의 주체로 단언한다. 아동은 부모나 국가의 소유가 아니며 단순히 관심의 대상이 아니다."

-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8, 47항

2. 참여와 결정을 훈련할 수 있는 학교

- : 배제와 강요가 없는 학교 - 학생의 참여는 권리이다.
- : 형식적 참여, 명목적 참여, 장식적 참여는 진정한 의미의 참여가 아니다.



“아동의 의견을 “듣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비교적 큰 도전이 아니며, 그들의 견해에 적절한 비중을 두는 것이야말로 실질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다.”

-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5, 12항

3. 차이를 존중하고 차별에 맞서는 학교

- : 차별과 획일이 없는 학교? 학교는 학생의 다양성을 사랑해야 한다.
- : 모든 학생은 차이를 존중받는 교육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다양성은 교육의 성장이란 민주화한 삶에 필수적이다.”

4. 감당할 만한 교육

- : 배움이 즐거운 학교? 학생은 학습할 능력을 타고났지만 잘못된 교육에 의해 학습 능력을 잃어버릴 수 있다.
- : 학생이 육체적, 정신적, 경제적, 문화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주는 교육은 '교육'의 궤도를 이탈한 것이다.

5. 자유의 행사를 통한 책임 있는 삶의 영위

: 자유를 통해 책임을 배우는 학교? 학생은 인격과 자유를 존중 받을 때 타인과 사회와의 관계에 대해 정당한 관심을 가질 수 있다.



“교실과 학교는 학생들이 자신의 견해를 표현할 것을 격려하고 허용해야 하며, 스스로 생각할 자유와 타인의 견해를 존중할 자유를 이해하는 장이다. 교육에 대한 권리는 이러한 자유의 행사를 포함한다.”

- 유엔 교육권 특별보고관 보고서

E/CN.4/2005/50, 115-7항

6. 학생의 삶에 대한 총체적 돌봄이 있는 학교

: 학습뿐 아니라 삶을 돌보는 학교? 학교는 중요한 인격적, 사회적 환경이다.

: 학생의 삶을 총체적으로 바라본다는 것은 학생이 들어오기 이전 상황과 학교를 떠난 이후 '가정 일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유념하는



“학교는 의료서비스 및 기타 서비스를

7. 인권의 상호불가분성에 대한 존중

: 자유와 보살핌이 함께 보장되는 학교? 학생의 두 권리는 상호 연관되어 있다.

: 물질 조건이 뒷받침되어야 자유의 행사도 가능한, 보살핌을 제공한다는 명분으로 학생의 의견과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

8. 네트워크와 연대가 꽃피는 학교

: 한 아이를 키우는 데는 '마을' 하나가 필요하다.

: 학생 권리의 이행에는 학생 자신을 포함한 사회의 전 부문의 참여와 협력이 필요하다. 학교는 폐쇄공간이 아니라, '마을'에 열려 있어야 한다.



“아동의 인권 보장, 보호 및 감독을 위한 비정부기구와의 제휴와 연대의 발전을 환영하며 정부가 그들에게 비지시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비정부기구와의 긍정적인 공식적·비공식적 관계를 발전시킬 것을 촉구한다.”

-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5, 59항

9. 교사의 권한과 역량 강화

: 학생인권 문제를 교사 개인의 책임으로 돌릴 학생인권 보장은 시스템을 갖춘 학교를 요구

: 교사는 능동적 참여를 보장받고 학생인권을 는 권한을 확보해야 한다.



“교사는 인권()
템을 갖추는 ()
이다. ()어떤

10. 권리 구제에 대한 보장

: 학생 인권이 의미 있으려면 권리 침해가 있을 때 정할 효과적인 구제조치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 불이익에 대한 우려로 권리 회복이 포기되어서는

[조례안의 구성]

장	장의 제목	주요 내용
제1장	총칙	조례의 목적, 개념 정의, 학생인권보장 일반 원칙, 교육관계자의 책무, 교육관계자의 교육환경개선 노력의무
제2장	학생의 인권	○총 10개의 절과 23개 하위 권리조항으로 구성 ○차별받지 않을 권리(제1절), 폭력 및 위협으로부터의 자유(제2절), 교육에 관한 권리(제3절),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정보의 권리(제4절), 양심·종교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제5절), 자치 및 참여의 권리(제6절), 복지에 관한 권리(제7절), 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제8절), 권리침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제9절), 소수 학생의 권리 보장(제10절)
제3장	학생인권의 진흥	학생인권의날(제29조), 인권교육과 홍보(제30조~제33조), 정기적 실태조사에 기초한 인권실천계획 수립(제34조~35조), 학생인권심의위원회 및 학생참여위원회 설치 및 운영(제36조~37조), 학교별 평가 및 지침 제시(제38조), 시민활동 지원(제39조) 등
제4장	학생인권침해에 대한 구제	학생인권옹호관 제도(제40조~44조), 학생인권 침해에 대한 상담 및 구제(제45조 ~47조) 등
제5장	보칙	학교별 규정개정심의위원회 설치(제48조) 등
부칙		조례 시행일(제1조), 경과조치(제2조)

[각 조항의 의미와 검토사항]

■ 눈여겨볼 지점들

- ✓ 조례안의 내용은 인권침해에 취약한 조건에 놓인 소수 학생들의 상황을 빠짐없이 반영하고 있는가?
- ✓ 조례안의 내용은 학생인권과 관련하여 제기되어 왔던 문제들, 향후 제기될 가능성이 높은 문제들을 예방할 수 있는 조치들을 포함하고 있는가?
- ✓ 조례의 각 조항들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가?
예) 성소수자의 입장에서 바라본 표현의 자유/ 다문화가정 학생의 입장에서 바라본 학습권 등
- ✓ 학교의 역할, 교육청의 역할을 잘 구분해서 제시하였는가? 추상적인 노력 의무 조항으로 흐르고 있지는 않은가?

■ 내용과 쟁점 검토

경기도학생인권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헌법」 제31조,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교육기본법」 제12

조 및 제13조,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에 근거하여 학생의 인권이 학교교육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 학생인권조례의 근거 법률을 명시함으로써 상위법의 근거가 없다, 상위법과 충돌한다는 비판에 대비
- ☞ 유엔아동권리협약도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국제법으로서 조례의 근거 법률로 명시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교”라 함은 경기도 내에 소재한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를 말한다.
2. “학생”이라 함은 제1호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3. “교직원”이라 함은 「초·중등교육법」 제19조 제1항의 교원 및 같은 조 제2항의 직원을 말한다.
4. “학생의 인권”이라 함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 중 학생에게 적용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말한다.

- ☞ 초·중등교육법 2조에 규정된 학교에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공민학교, 각종학교, 특수학교 등이 포함됨
- ☞ ‘학교에 재학중인 사람’은 퇴학 여부를 다투는 사람도 당연히 포함되는 것임
- ☞ [쟁점] 비인가 대안학교, 징계의 일환으로 학생을 위탁받아 교육하는 위탁교육기관도 이 조례가 규정한 ‘학교’에 해당하는가.

제3조(학생의 인권 보장원칙) ①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학생의 인권은 학생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최소한의 권리이며, 학생의 인권은 이 조례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어서는 아니 된다.

② 학생의 인권에 대한 제한은 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교육의 목적상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학생이 그 제·개정에 참여한 학칙 등 학교 규정으로써 할 수 있다.

- ☞ 조례에 미처 담지 못했거나 분명히 제시되지 못했다는 이유로 학생 인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열거되지 않은 권리 내용도 경시되어서는 아니 됨’을 명시함
- ☞ 교육목적상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학생의 인권을 제한하더라도 본질적 내용은 침해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그 제한 방식도 ‘학생이 참여한’ 상태에서 제정된 ‘규정’을 통해서만 가능토록 제한 요건을 둠

제4조(책무) ① 교육감은 교육·학예에 관한 정책을 수립할 때 학생의 인권을 실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학교의 설립자 및 경영자, 학교장, 교직원, 학생의 보호자 등은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학생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③ 학생은 인권을 학습하고 자신의 인권을 스스로 보호하며, 교사 등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 교육감의 학생인권 실현 노력 의무를 명시
- ☞ 2항은 초·중등교육법 18조4항의 내용을 옮겨오되, 보호자의 노력 의무도 포함시킴. 우리 사회가 학교만 문제삼는다는 학교 관리자 등의 의견이 비등함에 따라 가정교육의 책임을 강조하기 위해 삽입

☞ 학생의 책무 조항을 삽입하는 것과 관련하여 자문위원회 내부 논쟁이 있었으나, ‘학생에게 권리만 줄 뿐 책임은 나 몰라라 한다’는 비판을 의식하여 자기 인권 보호와 교사 등 타인의 인권 존중에 힘쓰도록 하는 규정을 삽입함

☞ [쟁점] 학교가 아닌 보호자의 책임을 명시하는 것이 가능한가 혹은 바람직한가와 관련하여 긴장이 존재. 일례로 지난해말 조선일보에서는 조례를 비판하는 논거 가운데 하나로 ‘학부모에게 의무를 부여하고 인권교육을 받으라는 오만한 조항이 삽입돼 있다’고 지적한 바 있음

제5조(교육환경의 개선) 교육감과 학교의 설립자 및 경영자는 학생과 교직원의 교육활동에 적합한 교육시설과 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학생인권 보장이 교사에게 ‘금지 목록’을 부여함으로써만 실현 가능한 것이 아니라, ‘학생인권 보장 시스템’을 요구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 삽입

☞ ‘학생과 교직원’의 교육활동이라고 표현함으로써, 학생과 교사가 공통의 기반 위에 서 있음을 강조

제2장 학생의 인권

제1절 차별받지 않을 권리

제6조(차별받지 않을 권리) ① 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병력,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는 제1항에 예시한 사유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차별 사유의 ‘예시 조항’으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차별 관련 규정의 17개 사유에 더하여 학교 내 차별 양태를 고려한 징계, 성적 등을 추가

☞ 학생회장 입후보 자격, 열독실 운영 등에 있어 부당한 차별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근거규정으로 기능

☞ [보완] 그 외 좀더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할 차별 사유 예시 규정은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음

제2절 폭력 및 위협으로부터의 자유

제7조(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① 학생은 따돌림, 집단괴롭힘,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 및 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에서 체벌은 금지된다.

③ 학교와 교육감은 따돌림, 집단괴롭힘, 성폭력 등 학교폭력 및 체벌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 체벌을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폭력의 한 형태로 바라보고 금지

☞ 체벌 금지는 교육당국의 정책 방향이기도 하고, 이미 체벌을 공식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학교도 존재.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연구용역팀의 설문조사 결과, 다수의 교사가 체벌의 대안으로 상담기능의 확충 등을 꼽음

☞ [쟁점]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체벌을 ‘허용’한다고 흔히 이해되고 있기 때문에, 체벌 금지 조항

이 상위법에 저촉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음. 이른바 ‘교육적 체벌’을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인정하고 있다는 것임. 그러나 헌법재판소를 비롯한 법원에서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체벌을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되고, 다만 체벌 사건에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처벌을 면해주는 방식으로 이 조항을 적용’하고 있음

☞ [쟁점] 체벌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인지에 대해서도 의견 편차가 상당함. 체벌 금지와 관련해서 ‘무릎을 꿇리는 것도 못하는 것이냐’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함.

제8조(위험으로부터의 안전) ① 학교는 학생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체계를 정비하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학교의 장은 신속하게 피해자를 구조하고, 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및 지역주민과 협력하여야 한다.

☞ 이 조항은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법적 의무를 다시금 확인하는 한편, 교사가 아닌 학교장의 책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 삽입

☞ 학교안전사고와 관련해서 교사의 안전 관리 책임을 강조하는 현실이 존재. 교총이나 전교조로 들어오는 ‘교권 상담’의 상당수가 안전사고의 책임과 관련해서 불이익을 호소하는 내용. 따라서 이 조항은 학생 인권과 교사 권리를 동시 보장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음

제3절 교육에 관한 권리

제9조(학습에 관한 권리) ① 학생은 법령과 학칙에 근거한 정당한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학습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② 학교는 교육과정을 자의적으로 운영하거나 학생에게 임의적인 교내·외 행사 참석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전문계 고등학교는 현장실습 과정에서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학교와 교육감은 일시적 장애를 포함한 장애 학생, 다문화가정 학생, 예·체능 학생, 학습곤란을 겪는 학생 등의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 교육과정의 자의적 운용, 교내외 행사 참석 강요 등으로 이루어지는 ‘학생 강제동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항. 교육과정의 편법 운용이나 행사 참석 강요는 교사의 수업권도 침해하는 것이므로, 학생인권과 교사 권리의 상호의존성을 보여주는 대표적 조항이라고 볼 수 있음

☞ 전문계 고등학교 현장실습은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산업체 파견된 현장실습생이 교육적 성격의 현장실습을 거의 제공받지 못하고 있음. 현장실습생의 건강, 안전, 노동, 교육권을 동시 보장하기 위해 이 조항을 삽입. 그러나 현장실습생 권리 보호의 구체적 내용이 선명히 제시되지 못함

☞ 학습의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 대한 지원 책임을 명시. 학습 어려움의 예시를 다양하게 고려하지 못하고 있고, ‘노력하여야 한다’는 모호한 규정이라는 한계가 존재

제10조(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의 자유) ① 학생은 야간자율학습, 보충수업 등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자유롭게 선택하여 학습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는 학생에게 야간자율학습, 보충수업 등을 강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학교는 방과후학교 등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에서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양한 프로그램

을 개발·운용함으로써 교육의 다양성과 학생의 실질적인 선택권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 1항에서 선택권을 보장하고, 2항에서 구체적 내용으로 야자, 보충 강제를 금지하고 있음. 강제 교육은 동의에 반한 교육이라는 점에서도, 학생이 감당할 만한 수준을 넘어선 학습부담을 강제한다는 점에서도 인권침해라고 바라본 것임
- ☞ 선택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기 위해서는 선택의 다양성이 확보되어야 하므로, 비정규 교육활동의 다양성 보장 의무를 명시
- ☞ 현재도 정규교과 외 교육활동에 대해서는 '선택권 보장'이 교육당국의 방침임. 그런데 학교현장에서는 학생의 동의가 아니라 학부모의 동의를 받고 있음. 조례를 통해 선택권의 주체가 학부모가 아닌 학생이라는 점이 새롭게 확인되고 있음
- ☞ [쟁점] 이 조항은 흔히 사교육을 부추긴다, 학습분위기를 훼손한다, 방과후 교육활동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학생의 의사는 무시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 그러나 이미 사교육 참가는 보충·야자를 빠질 수 있는 명분이 되어 있음. 공교육에서 제공되는 정규교과 외 교육이 학생에게 매력적이고 진정한 동의에 기초한다면, 학교에 남기를 원하는 학생이 늘어나고 학습분위기가 오히려 더 좋아질 수 있다고 봄. 또한 참여를 원하는 학생에게는 추가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는 만큼, 이런 비판은 조항의 의미를 잘못 이해한 것임.

제11조(휴식을 취할 권리) ① 학생은 건강하고 개성 있는 자아의 형성·발달을 위하여 과중한 학습 부담에서 벗어나 적절한 휴식을 취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는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을 강요함으로써 학생의 휴식을 취할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학생의 휴식을 취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

- ☞ 입시경쟁이 치열한 현실에서 학생들 다수도 과중한 학습 부담을 스스로 떠안게 됨. 이런 현실에서 선택권 보장만으로는 학생의 건강권 보장과 전인적 발달의 여건을 만들어내기 힘들. 따라서 학습권에 이어 휴식권도 동시 보장함으로써, 적절한 수준의 학습 부담만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한 것임. 학생 인권이 상대적으로 잘 존중되는 나라에서는 학생의 학습 부담 시간을 '노동시간'과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제한하고, 나머지 시간을 놀이나 문화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제4절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정보의 권리

제12조(개성을 실현할 권리) ① 학생은 복장, 두발 등 용모에 있어서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는 두발의 길이를 규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학교는 정당한 사유와 제19조의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학교의 규정으로써 제1항의 권리를 제한할 수 없다.

- ☞ 복장, 두발 등에 있어서 각자의 개성에 따른 생활양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한편, 특히 두발 길이에 있어서는 규제를 아예 둘 수 없도록 함. 실제로 두발 길이와 관련해서는 제한을 두지 않는 학교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 두발길이 자유란 학생들이 머리를 기를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를 짧게 자르든 길게 기르든 학생 자신의 자율적 선택에 따라 결정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임.
- ☞ 이 조항은 복장, 두발의 전면 자유화를 강제하는 것은 아님. 파머, 염색 등은 학교규정으로 일정한 제

한을 가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 것임. 교복 착용도 학교규정을 통해 가능. 다만 복장, 두발 등을 규제할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입증되어야 하고, 학생의 참여와 의사가 존중되는 절차를 통해 규정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 [쟁점] 두발, 복장 자유와 관련해서는 탈선 우려, 학습 분위기 훼손, 빈부격차에 따른 위화감 조성 등의 우려가 제기되었음. 그러나 탈선, 학습 분위기 훼손은 복장, 두발과 무관한 요인이 주요 원인. 또한 두발, 복장에 대한 불합리한 제한은 학교나 교사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오히려 학습에 대한 집중을 방해. 빈부격차에 따른 위화감 문제는 교복 착용이 불허된다는 오해로부터 주로 제기된 비판이기도 하고, 교복을 착용하더라도 빈부격차를 가릴 수 있는 것도 아니며, 존재하는 불평등을 가리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지도 의문임

제13조(사생활의 자유) ① 학생은 부당한 간섭 없이 개인 물품을 소지·관리하는 등 사생활의 자유를 가진다.

② 교직원은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 등을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가 아닌 때에는 학생의 동의 없이 소지품 검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교직원이 교육목적상 필요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학생의 소지품 검사를 하는 경우 그 검사는 필요한 최소한의 정도에 그쳐야 하며, 또한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일괄검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교직원은 일기장이나 개인수첩 등 학생의 사적인 기록물을 열람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교육목적상 필요한 경우에도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④ 학교는 학생의 휴대폰 소지 자체를 금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학교는 수업시간 등 정당한 사유와 제19조의 절차에 의해 학생의 휴대폰 사용 및 소지를 규제할 수 있다.

⑤ 학교는 다른 방법으로는 안전 등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할 수 있으며, 설치 여부나 설치 장소에 관하여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고 설치장소를 누구나 쉽게 알 수 있게 표시하여야 한다.

☞ 전체 학생을 범죄인 취급하는 일괄 소지품 검사, 사적 기록물 열람은 이루어져서는 안 되고, '교육목적상 필요'와 '필요 최소한의 정도'라는 요건을 충족시킬 것을 요구. 그러나 '교육 목적상 필요'가 무엇인지가 모호

☞ CCTV의 경우에도 설치의 정당성이 먼저 입증되어야 하고, 설치 여부나 장소 등을 정할 때 학생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함

☞ [쟁점] 학교마다 금지하는 개인 소지 물품의 목록이 조금씩 차이를 갖고 있음(예: 악세서리 전면 금지 학교도 있고 종교적 의미를 지닌 악세서리만 허용하는 학교도 있고 규제를 아예 하지 않는 학교도 있음). 이 조항에서는 소지할 수 있는 물품의 목록을 제시하기보다는 개인 물품 소지에 있어 부당한 간섭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일반 원칙만을 제시하는 방식을 택함. 따라서 학교마다 어떤 물품을 소지할 수 있는지를 둘러싼 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

☞ [쟁점] 대표적으로 휴대전화를 둘러싼 의견 대립이 심각. 현재 휴대전화에 대한 규정은 학교마다 천차만별임. 학급단위 자체 규칙에 맡길 뿐 학교단위의 규정이 없는 학교도 있는 반면, 수업시간만 사용을 금지하는 학교, 일과시간 동안 사용·소지를 전면 금지하는 학교, 쉬는시간에 특정 장소에서만 사용을 허가하는 학교, 아예 소지 자체를 불허하는 학교도 있음. 최근에는 몇몇 지자체에서 휴대전화 학교반입 금지 조례 제정을 시도하거나 휴대전화 금지 교장단 결의 등이 있기도 했음(휴대전화 금지 조례 제정이 유보된 것은 휴대전화의 호신 기능, 학습 도움 기능 등에 대한 호소가 일정한 공감대를 얻었기 때문).

휴대전화 소지·사용 허용에 대해서는 학습 분위기 훼손, 교사 수업권 침해, 휴대전화 중독 등의 비판이 제기되었음. 그러나 휴대전화는 학생들에게 이미 중요한 통신수단이자 호신 수단(위급한 상황에서의 연락, 폭력 상황 촬영 등)이 되어 있음. 국가인권위원회도 휴대전화의 소지 자체를 불허하는 것은 통신의 자유

침해라는 결정을 내놓은 바 있음.

☞ [쟁점] CCTV 설치와 관련하여 전면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존재. 또 설치 가능 장소, 운영 시간, 녹화 테이프에 대한 접근권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음

제14조(사생활의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① 학생은 가족, 교우관계, 성적, 징계기록 등 사적인 정보를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는 학생에게 교외에서의 이름표 착용을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③ 학교는 학생에 관한 정보를 수집·처리·관리함에 있어서 적법하고 적절한 수단과 절차에 의하여야 한다.

④ 학교는 교육비 미납사실 등 학생에 관한 사적 정보를 본인 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누구든지 학생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는 개인 정보를 지득한 경우에는 이를 함부로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성적 공개, 수업료/급식비 미납 공개, 박음질된 이름표 착용 강요 등을 금지

제15조(정보의 권리) ①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 본인에 관한 학교 기록을 언제든지 열람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은 학교에 대해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③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 본인에 관한 기록 중에 부정확한 내용,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내용, 학생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등에 대하여 정정이나 삭제를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④ 학교는 예·결산 등 학교 재정 관련 정보를 학생이 쉽게 알 수 있는 내용과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 개인 정보의 열람/변경/삭제 요구권, 징계 등 관련 정보의 공개 청구권 등을 보장

☞ 정보 접근권 보장을 통해 학생의 학교운영 참여를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목표

제5절 양심·종교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

[A안]

제16조(사상·양심·종교의 자유) ① 학생은 사상 및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② 학교는 학생에게 사상 및 양심에 반하는 내용의 반성, 서약 등 진술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학교는 학생에게 예배 등 종교행사 참여 및 대체과목 없는 특정 종교과목 수강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B안]

제16조(양심·종교의 자유) ① 학생은 세계관·인생관 또는 가치적·윤리적 판단 등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② 학교는 학생에게 양심에 반하는 내용의 반성, 서약 등 진술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학교는 학생에게 예배 등 종교행사 참여 및 대체과목 없는 특정 종교과목 수강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 학생의 사상/도서 검열(학생회장 공약, 외부 활동, 소지 도서나 신문 등), 강요된 진술서와 반성문 작성, 서약서 제출(신입생 선서, 순결서약, 국기에 대한 경례/맹세 등), 종교 강요 등의 관행을 금지

☞ 종교 강요 금지의 내용은 애초 교육부 지침으로도 존재하고 있었으나 2008년 ‘학교자율화 조치’로 폐지되고 각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필요할 경우 지침을 제정토록 하였음. 종교 강요 금지를 조례에 포함시켜 관련 규정의 위상을 상향 조정하는 의미가 있음

☞ [쟁점] A안에 규정된 사상의 자유라는 ‘용어 사용’과 관련해서는, ‘사상’을 곧 특정 이데올로기로 해석하는 알레르기성 반응, 헌법에도 없는 규정을 조례에 포함할 수 없다는 비판 등이 제기. 또 학생이 사상의 자유를 갖는다는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는 이들이 많지 않았음. 따라서 B안에서는 사상의 자유라는 용어를 빼는 대신, 사상·양심의 자유의 내용을 구체화하여 제시하는 길을 택함

* 헌법재판소 등에서는 양심을 ‘세계관, 인생관, 주의, 신조 등은 물론, 그에 이르지 않는 가치적, 윤리적 판단’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음.

☞ [쟁점] 애초 ‘초안’에서는 ‘양심에 반하는 반성문, 서약서’라는 표현이 포함돼 있었는데, 교육의 일환으로 사용되는 반성문 작성도 금지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음. 이에 최종안에서는 반성문이라는 문서의 형식이 아니라 ‘거짓 진술이나 양심에 반하는 반성 강요’가 금지의 핵심이라는 점을 명확히 함. 잘못에 대한 성찰과 교육적 소통은 중요하지만, 양심에 반하는 반성을 강요하는 것은 반인권적이자 반교육적인 행위라고 봄

[A안]

- 제17조(의사 표현의 자유)** ① 학생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② 학교는 학생이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경우 부당하고 자의적인 간섭이나 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학생은 수업시간 외에는 평화로운 집회를 개최하거나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교육 목적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 ④ 학교의 장은 교육목적상 필요한 경우 집회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교 규정에 따라 일정한 조건을 부가할 수 있다.
- ⑤ 학교는 교지 등 학생 언론활동, 인터넷홈페이지 운영, 평화로운 집회와 결사 등에서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필요한 시설 및 행·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B안]

- 제17조(의사 표현의 자유)** ① 학생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② 학교는 학생이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경우 부당하고 자의적인 간섭이나 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학교는 교지 등 학생 언론활동, 인터넷홈페이지 운영 등에서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필요한 시설 및 행·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 학생의 의사 표현, 언론 활동, 홈페이지 의견 제시, 설문조사, 서명운동, 피켓팅, 전단지 배포, 교내외 집회, 모임 결성 등을 포함한 표현의 자유를 보장

☞ A안에서는 집회의 자유를 언급한 조항이 포함돼 있는 반면, B안에서는 해당 조항을 삭제.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더라도 수업시간 외에 가능토록 하고, 학교규정으로 집회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조건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B안에서 집회의 자유에 관한 명시적 조항이 빠졌다고 해서, 표현의 자유의 일

환으로 보장되는 집회의 자유가 사라지는 것은 아님.

☞ [쟁점] 집회의 자유 보장에 대해서는 학생을 운동권 만든다, 교육현장을 혼란에 몰아넣는다, 교육을 정치화한다 등과 같은 비판이 제기되었음. 이 조항은 김상곤 교육감도 가장 부담스러워한 조항이었음. 그러나 집회의 목적, 양태, 규모 등은 매우 다양할 수 있는데도(학생조회는 집회에 포함됨), 학교가 이수리장이 될 것이라는 우려는 부풀려진 것임. 학생들 중에서도 집회의 자유를 적극 행사하는 사람은 많지 않음. 학교 안 의견 수렴 절차가 민주적, 역동적으로 가동된다면, 굳이 집회까지 준비할 학생은 거의 없을 것임.

☞ [쟁점] 집회의 자유를 명시한 A안이 B안보다 더 진보적이라는 평가는 단순한 평가라고 볼 수 있음. 물론 집회의 자유에 대한 강력한 반발 때문에 B안에서 해당 조항이 삭제된 것은 사실. 그렇지만 B안은 A안에서 후퇴한 것이고, A안이 더 훌륭한 조례안이라고 볼 수도 없음. 애초 '수업시간 외 집회의 자유 보장'이라는 조항은 학생에게 없었던 집회의 자유를 창설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당연히 보장되어야 했던 집회의 자유를 '좁혀서 보장'하는 것이었음(수업시간에는 왜 집회를 해서는 안 되는가?). 또 A안이 말하는 '교육목적상 필요한 경우'와 '학교규정으로 둘 수 있는 조건'이 의미가 모호하여 오히려 집회의 자유를 더욱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 바 있음. 이런 점을 두루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음

제6절 자치 및 참여의 권리

제18조(자치활동의 권리) ① 동아리 등 학생의 자치적인 활동은 보장된다.

② 학교는 학생자치기구의 구성과 소집 및 운영 등 활동에서 자율과 독립을 보장하고 성적 등을 이유로 구성원 자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 학생회, 동아리 등 학생자치활동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

☞ [보완] 학생자치기구의 권한을 좀더 구체화시켜 제시할 필요가 있음. 기구의 구성, 의결 범위, 지도교사의 개입 범위, 예·결산, 학교운영 참여 범위 등 현재 존재하는 제한 요인들을 두루 살펴 보완할 필요

제19조(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 ① 학생은 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는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여 학칙 등 학교 규정을 제·개정하고, 이를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학교는 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 과정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학생회 등 학생자치기구의 의견제출권을 보장해야 한다.

☞ 현재 초·중·고등교육법상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은 참여할 수 없음. 학교규정의 제·개정 과정에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생대표의 참여를 보장하라는 것이 교육부의 지침이기도 하나, 지켜지는 학교가 많지 않음. 따라서 조례를 통해 학생의 학교규정 제·개정 참여권을 명시하고, 나아가 학교규정의 제·개정을 담당하는 별도의 위원회(49조 참고)를 조례를 통해 두고자 함

☞ [보완] 학교규정의 제·개정 과정에 학생자치기구의 의견 제출권 보장만으로 충분하지 따져볼 필요가 있음. 학생자치기구의 학교운영위원회 참관권, 현장 의견 제출권, 의결권 등 보장 여부를 관련 법을 추가 검토하여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것

제20조(정책결정에 참여할 권리) ① 학생은 학교 운영 및 교육청의 교육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할 권

리를 가진다.

- ② 학생회 등 학생자치기구 및 학생들의 자발적 결사는 학생의 권리와 관련 있는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할 권리를 가진다.
- ③ 학교장과 교사는 학생대표와의 면담 등을 통하여 정기적으로 의견을 청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④ 학생대표는 학생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어야 한다.
- ⑤ 학교장과 교육감은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할 때에는 학생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 학생자치기구, 학생대표는 물론 학생이 개인적으로, 또는 모임을 통해 학교 운영과 교육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

☞ [쟁점] 이 조항과 관련해서는 미성숙한 학생에게 중요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무리라는 비판이 제기되었음. 학교운영위원회 참석, 발언권 역시 상위법에 없는 권리를 창설한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음. 그러나, 학생인권조례에 포함된 권리들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학생의 학교 운영과 정책결정 참여권 보장이 반드시 필요함. 또한 참여의 기회야말로 가장 유효한 성숙의 기회가 된다는 점, 학생의 참여가 억압되고 있는 현실에서도 학생들이 성숙한 판단 능력과 책임 능력을 이미 보여주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미성숙론은 참여권을 부정할 명분이 되지 못함

제7절 복지에 관한 권리

제21조(학교복지에 관한 권리) ① 학생은 학습부진, 폭력피해, 가정위기, 비행일탈 등 각종 위기상황 극복과 적성발견, 진로모색 등 정체성 발달을 위하여 학교에서 상담 등 적절한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② 학교와 교육감은 빈곤 학생, 장애 학생, 다문화가정 학생 등 경제·사회·문화적 사유로 권리 실현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배려하는 데에 우선적으로 예산 등의 자원을 배정하여야 한다.
- ③ 학교와 교육감은 학생이 사회복지에 관한 권리를 향유하기 위해 필요한 상담 및 그에 따른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수립 또는 정비하여야 한다.
- ④ 학교와 교육감은 특별한 상담 및 돌봄이 필요한 학생을 위하여 아동복지 및 인권과 관련된 지역 사회의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특히 보호자를 교육하고 보호자의 참여와 협력을 유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여야 한다.

☞ 상담 등 지원을 받을 권리, 권리 실현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 지원을 위한 우선적 예산 배정, 관련 제도의 정비, 지역사회와의 협조체계 구축, 보호자 대상 교육 등을 명시

☞ 보호자에 대한 교육, 보호자의 참여와 협력을 유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은 현장 교사들의 강력한 요청이 있었음. 현재 학생 지원 과정에서 보호자가 협조하지 않을 때 학교나 교사가 할 수 있는 일이 원천 봉쇄되고 있는 만큼, 보호자의 협력을 유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임

제22조(교육환경에 대한 권리) ① 학생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② 학교는 적절한 양과 질의 도서 및 도서관 공간 확보, 청결한 환경의 유지, 화장실과 적절한 탈의 및 휴게 공간의 확보, 적절한 냉난방 관리, 녹지공간 확대 등 최적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학생인권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시설 관련 욕구들을 ‘건강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이라는 개념 아래 포괄하여 보장

제23조(문화활동을 향유할 권리) ① 학생은 다양한 문화활동을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 ② 학교는 학생의 다양한 문화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육, 공연, 전시 등의 문화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여야 한다.
- ③ 교육감은 제2항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학교 및 지역의 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개인적 문화활동은 물론 동아리 활성화를 위한 요건을 감안하여 별도의 권리조항으로 구성하여 제시

제24조(급식에 대한 권리) ① 학생은 안전한 먹을거리에 의한 급식을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② 학교는 급식재료, 급식업체 등 급식 관련 정보를 학생에게 제공하고, 정기적으로 급식에 관한 의견조사를 실시하며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 ③ 학교와 교육감은 친환경, 근거리 농산물에 기초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④ 교육감은 직영급식과 의무교육과정에서의 무상급식을 실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안전한 급식뿐 아니라, 급식 관련 정보 접근권과 의견 표명권을 명시. 직영급식, 의무과정에서의 무상급식을 위한 노력 의무 조항도 삽입

제25조(건강에 관한 권리) ① 학생은 최적의 건강상태를 유지하고, 아플 때 적절한 치료를 받고 보건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건강권을 가진다.

- ② 여학생은 생리로 인한 고통 때문에 결석하거나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학교는 생리 중에 있는 여학생에 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적절한 배려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③ 학교는 학생이 아플 때 이용할 수 있는 보건실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생리공결제를 조례 수준에서 권리화하는 한편, 보건실과 보건교사가 더욱 절실한 지역인데도 보건실조차 없는 소외지역 학교를 고려하여 보건실 확충 노력 의무를 명시

☞ [보완] 보건실 확충 노력을 학교와 더불어 ‘교육감’에게도 부여해야 할 것으로 보임. 학생 건강 정보나 보건실 이용 규정, 보건교사의 역할, 학생이 인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지거나 원하지 않는 건강 관련 조치(금연침 시술 등) 등과 관련해서도 보완할 부분이 없는지 검토 필요

☞ [보완] 건강 향상을 위해 학교가 말아야 할 조치, 특히 임신한 학생, 질환을 가진 학생 등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학교가 무엇을 해야 할지도 세부적인 보완이 필요

제8절 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제26조(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① 학생의 징계는 징계사유에 대한 사전 통지, 공정한 심의기구의 구성, 소명의 기회 보장, 대리인 선임권 보장, 재심요청권의 보장 등 적법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 ② 학교는 징계와 그 전후의 절차에서 징계대상 학생의 회복과 복귀를 목표로 하여야 하며, 그것을 위하여 지역사회, 보호자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 ③ 학교는 징계 내용을 공고하여서는 아니 되며, 상벌점제를 포함한 학생에 대한 지도 방법 및 절차

에서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 학생 징계 과정에서 적법성 보장을 명시적으로 요구. 나아가 학생 징계가 '학생의 회복과 복귀'를 목표로 이루어져야 함을 명시
- ☞ 학생에게 '대리인 선임권'을 보장함으로써, 학생의 변론권을 더욱 강화하여 보장. 현행 초·중·등교육법상에서는 학생 또는 보호자의 변론권만 보장되어 있을 뿐임
- ☞ [쟁점] 상벌점제(그린마일리지제도)에 대해서는 그 자체가 인권침해인 만큼 조례를 통해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고, 상벌점제의 벌점 규정을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음. 자문위원회 내부에서는 상벌점제가 아직 시범단계에 있고 차차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 만큼 조례를 통해 상벌점제를 성급히 금지하다 보면 많은 반론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고 판단하여 '상벌점제 등을 통해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정도의 규정으로 합의

제9절 권리침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 제27조(상담 및 조사 등 청구권)** ①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학생의 인권 침해에 대하여 학생인권옹호관에게 상담 및 조사 등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 ②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모든 학생의 인권 관련 사항에 대하여 관계 기관에 문서 등으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 ③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청구권 및 청원권 행사에 관하여 비밀을 보장받으며, 그 행사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 ④ 학생인권옹호관 및 학교장과 교육감은 청구 및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지며, 그 처리 결과를 청원한 사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 학생의 권리를 구제받을 권리를 명시하고 그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규정

제10절 소수 학생의 권리 보장

- 제28조(소수 학생의 권리 보장)** ① 학교와 교육감은 빈곤, 장애,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운동선수 등 소수 학생이 그 특성에 따라 요청되는 권리를 적정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 ② 학교와 교육감은 소수 학생에 대한 편견과 차별의식을 해소하는 데 필요한 인권교육프로그램과 소수 학생을 위한 진로 및 취업 프로그램을 별도로 마련하여야 한다.
- ③ 학교와 교육감은 장애 학생에 대하여 교내외 교육활동에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고 참여를 보장하며, 적절한 교육 및 평가방법을 제공하는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 ④ 학교와 교육감은 빈곤 학생이 가정형편으로 말미암아 수학여행 등 교육활동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⑤ 학교와 교육감은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하여 교육활동에서 언어·문화적 차이 등으로 인한 차별 없이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또한 경기도에 거주하는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만으로 학교에 전·입학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 제6조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구체화하여 소수자의 위치에 놓여있는 학생들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

☞ [보완] 학교 안 소수 학생들이 처한 어려움을 고루 반영하여 조항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예를 들어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는 학생을 위한 지원 조치(예: 노동인권상담 등을 받을 권리), 운동선수를 위한 학습권 보장·폭력으로부터의 보호·합숙소의 환경 등에 관한 조치 등이 보완되어야 함

제3장 학생인권의 진흥

제1절 인권교육

제29조(경기도 학생인권의 날) ① 교육감은 학생의 인권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경기도 학생인권의 날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학생인권의 날의 취지에 맞는 사업을 실시하고, 학생, 교원 및 도민의 참여를 유도하여야 한다.

제30조(홍보) 교육감은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내용과 이 조례에서 보장하고 있는 내용 등 학생의 인권에 대하여 일반인용과 중·고등학생용, 초등학생용 설명서 및 교육용 교재를 제작·배포하는 등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1조(학교 내 인권교육·연수) ① 학교는 학생에게 학생의 인권에 관한 교육을 학기당 2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전문계 고등학교 현장실습, 학생 아르바이트의 증가 등을 고려하여 노동권 관련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학교는 교원을 대상으로 학생의 인권에 관한 교원연수를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③ 학교는 학생 스스로 행하는 자율적인 인권학습활동을 보장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32조(교원에 대한 인권 연수 및 지원) ① 교육감은 교원에 대한 각종 연수에 학생의 인권에 관한 내용을 편성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교의 인권교육과 교원 연수를 위한 교육자료 및 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제33조(보호자 교육) ① 학교는 보호자에 대하여 학생의 인권에 관한 교육 또는 간담회를 연 2회 이상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보호자에 대한 인권교육 자료를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 학생인권에 관한 홍보, 교육 의무화. 학생 대상 교육은 학기당 2시간, 교원 대상 학생인권 연수는 연 2회 실시를 명문화. 보호자에 대해서도 인권교육 또는 간담회를 추진하도록 함
☞ 이를 지원하기 위한 교재, 프로그램 개발 보급 의무를 교육감에게 부여

제2절 인권실천계획 등

제34조(인권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매년 경기도내 학생인권 실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의 조사 결과가 확정되는 즉시 공표하여야 하며, 이를 경기도교육위원회와 경기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5조(실천계획의 작성) ① 교육감은 학생의 인권과 교직원의 권리를 실현하는 데 필요한 교육활동과 적절한 수준의 교육·복지·휴식 시설을 갖추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학생의 인권 등의 향상을 위한 실천계획을 3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계획을 수립할 때는 학생인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공청회, 토론회, 지역순회 간담회 등을 통하여 학생, 교사, 보호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36조(경기도학생인권심의위원회) ① 학생의 인권에 관한 경기도교육청의 정책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기도학생인권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경기도학생인권심의위원회는 20명 이내로 구성하되, 학생인권옹호관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한다.

1. 교육, 아동복지, 청소년, 의료, 법률, 인권 전문가로서 관련 비영리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 또는 공개모집절차를 통해 신청을 받은 자
2. 학생참여위원회의 위원
3. 도민 중에서 학생인권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고 참여의지가 있는 자로서 공개모집절차를 통해 신청을 받은 자
4. 경기도교육청의 학생인권 관련 담당 공무원

④ 경기도학생인권심의위원회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두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경기도학생인권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1. 학생인권실천계획의 수립
2. 학생의 인권에 관한 제도개선
3. 기타 학생의 인권 신장을 위하여 교육감이 제안한 사항

⑥ 위원회 활동의 효율성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제5항 각호의 기능 중 일부를 소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37조(학생참여위원회) ① 교육감은 학생과 관련된 정책에 대한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경기도학생참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경기도학생참여위원회는 10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학생참여위원은 공개모집을 통하여 모집한 학생들 중에서 추첨을 통하여 선발한다. 다만, 위원회의 구성을 다양하게 하고 소수자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20명 이내의 범위 내에서 별도의 절차를 밟아 교육감이 위촉할 수 있다.

④ 경기도 학생참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교육감 및 학생인권옹호관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1. 경기도학생인권조례의 개정에 관한 사항
2. 학생인권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학생인권실천계획에 관한 사항
4. 기타 학생인권 실현 및 학생참여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⑤ 교육감은 지역교육청별로 학생참여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38조(학교별 평가 및 지침 제시) ① 교육감은 2년마다 학교별 학생인권실현 상황을 조사하고, 그

개선을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② 교육감은 제2장에서 규정하는 권리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여 각 학교에 제시할 수 있으며, 학교는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9조(시민활동 지원) 교육감은 학생의 인권보장을 위하여 노력하는 시민활동과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그러한 시민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매년 실태조사, 3년 단위의 실천계획 작성, 교육청의 정책 수립과 평가 등을 위한 20명 이내의 학생인권심의위원회 설치(학생인권옹호관이 당연 포함되는 일종의 전문가 위원회), 100명 이내의 학생참여위원회 설치, 학교 평가에 반영, 시민활동 지원과 협조 등이 규정됨

☞ 학생참여위원회의 경우, 추천이 아닌 공개모집을 통한 추첨 선발 방식을 택함. 또한 정원의 1/5은 소수자 대표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함

제4장 학생인권침해에 대한 구제

제40조(학생인권옹호관의 설치) ① 학생인권 침해에 대한 상담 및 구제를 위하여 학생인권옹호관을 둔다.

- ② 학생인권옹호관은 학생인권 관련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학생인권심의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교육감이 임명한다.
- ③ 학생인권옹호관은 상임 5인 이내로 하며, 교육감이 정하는 각자의 관할지역에서 활동한다.
- ④ 학생인권옹호관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
- ⑤ 학생인권옹호관은 학생의 인권에 대한 헌법 및 관련 법령 그리고 「유엔 아동권리에 관한 협약」을 비롯한 국제인권규범의 정신에 따라 그 직무를 독립적으로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 ⑥ 학생인권옹호관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도 개선 권고 등 중요한 사항은 옹호관회의를 통하여 결정한다.

제41조(겸직금지) ① 학생인권옹호관은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공무원, 교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

- ② 학생인권옹호관은 경기도교육청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기업이나 단체의 임원을 겸할 수 없다.

제42조(학생인권옹호관의 직무) 학생인권옹호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학생인권침해에 관한 상담
2. 학생인권침해 구제신청에 대한 조사 및 직권조사
3. 학생인권 침해에 대한 적절한 시정 및 조치 권고
4. 학생인권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 권고
5. 제2호 내지 제4호의 내용에 대한 공표
6. 기타 위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업무

제43조(학생인권옹호관의 복무 등) 학생인권옹호관의 복무,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44조(사무국) ① 학생인권옹호관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 ② 사무국에는 공무원 및 전문조사원 등 학생인권옹호관의 직무를 보좌하기 위한 인원을 둔다.
- ③ 사무국에 배치된 공무원 및 전문조사원은 학생인권옹호관의 지휘에 따라 사무를 처리한다.
-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사무국 및 전문조사원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5조(지역교육청별 상담실) ① 각 지역교육청마다 학생인권상담실을 둔다.

- ② 제1항의 상담실은 학생의 인권에 관한 상담을 하고, 그 결과를 정기적으로 학생인권옹호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조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 시급한 경우에는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46조(학생인권침해 구제신청 및 조치) ① 학생이 인권을 침해당하였거나 침해당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학생인권옹호관에게 그에 관한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구제신청을 받은 학생인권옹호관은 사건에 대하여 조사한 후에 교육청, 지역교육청, 학교 및 교직원에게 대한 시정권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③ 학생인권옹호관이 제2항의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교육감에게 통보하고, 그 요지를 공표하여야 한다.
- ④ 학생인권옹호관으로부터 시정권고를 받은 교육청, 지역교육청, 학교 및 교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권고사항을 이행하여야 하고, 조치결과를 즉시 학생인권옹호관 및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학생인권옹호관의 권고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제47조(조사) ① 학생인권옹호관은 제41조 각호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교육청, 지역교육청 및 학교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교직원 및 관계공무원에게 질의할 수 있다.

- ② 학생인권옹호관은 제45조 제1항의 구제신청에 대해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방문 조사를 할 수 있다.
- ③ 교직원 및 관계공무원은 제1항의 자료요구 및 질의, 제2항의 현장방문조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 행정감시기구인 옴부즈퍼슨(Ombuzperson)제도를 원용, 학생인권침해 사안을 조사, 시정 권고하고 예방하는 권리구제기구로서 3년 임기(1회 연임 가능)의 학생인권옹호관제도 도입. 5인의 학생인권옹호관은 각각 관할지역에서 활동하되(독임제 기구로 활동), 옴호관의 직무와 관련한 제도 개선 권고 등 주요 사안은 옴호관회의를 통해 합의하도록 함
- ☞ 5인의 옴호관만으로는 학생인권 사안을 모두 해결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산하에 사무국을 두는 한편, 지역교육청별로 학생인권상담실을 설치하도록 함
- ☞ 학생인권옹호관의 복무,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조례를 만들어서 규정하여야 함
- ☞ 학생인권옹호관의 권한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한과 유사. 강제조치는 취할 수 없음. 또 교육현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 등 강제조치는 두지 않는 대신, 시정권고를 이행·보고하고 권고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사유를 소명하도록 함으로써 실효성을 확보토록 함

제5장 보칙

제48조(규정개정심의위원회) ① 학교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는 이 조례에 부합하도록 학칙 및 규정을 제·개정하기 위한 심의위원회(이하 “규정개정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 ② 규정개정심의위원회는 교원, 보호자, 인권 관련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전문가, 학생대표로 구성한다.

- ③ 규정개정심의위원회는 학생들의 의견을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수렴하는 과정을 밟아야 한다.
- ④ 규정개정심의위원회는 규정 제·개정을 마친 후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⑤ 교육감은 규정개정의 방향, 절차, 규정개정심의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지침을 제시할 수 있다.

제49조(규칙) 교육감은 이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위임한 사항과 조례를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 ☞ 기존 학교운영위원회와는 별도로 각 학교마다 규정개정심의위원회를 따로 설치하도록 하여, 학생대표와 인권전문가의 참여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함
- ☞ 부칙에 따라 규정개정심의위원회는 조례 발효 이후 6개월 이내 구성되어야 함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경과조치] ① 교육감은 학생인권옹호관에 대한 별도의 조례가 제정될 때까지는 규칙의 정한 바에 따라 비상임학생인권옹호관으로 학생인권옹호관 제도를 운용할 수 있으며, 비상임학생인권옹호관의 복무 등에 대하여는 교육감이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 ② 이 조례가 공포된 이후 6개월 이내에 학교는 제47조의 규정개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서울학생인권조례에 관한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의견서

- 작성자 : 박재완

□ 제안 배경

학생인권조례는 총칙 제 1조 목적에서 “학생에게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의 교육 현실의 문제점들에 대한 반영일 것입니다.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는 성소수자학생을 포함한 모든 학생에게 안전하고 환영받는 교육 환경이 서울학생인권조례를 통하여 지지되고 널리 공유되기를 바랍니다.

청소년의 시기는 자아 정체감을 탐구하고, 자기 존중감을 발달시켜 시민의 한 사람으로써 사회에 기여할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가는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의 교육 현실은 성소수자(남성동성애자, 여성동성애자, 양성애자, 성전환자)로 자신의 성적체성을 확립한 학생과, 성적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는 학생에게, 지지의 기반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이성애자이고, 이성애만이 정상이다 라는 이성애주의에 기반한 교육과정들은 극심한 사회적 스트레스를 강화시켜서, 성소수자학생에게 결코 안전하지도,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해주지 못하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많은 문헌들에서 가장 차별과 혐오스런 존재로 성소수자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인권은 누군가에게는 옳고 그름 혹은 정의의 문제일 것입니다. 하지만 성소수자학생에게 인권이란 삶과 죽음의 문제일 수 있다 라는 사실을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 제안 내용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는 성소수자학생을 포함한 모든 학생에게 안전하고 환영받는 교육환경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안합니다.

첫째, 우리 사회처럼 학교도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 다문화가정,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등 다양한 학생이 존재합니다. 차이가 차별과 혐오가 되지 않고, 인간 그 자체로서 가치를 존중받을 수 있는 교육환경을 위해서,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 다문화가정,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등을 포함한 모든 학생은 교사의 가치관, 학교의 종교적 신념과 관계없이 자신의 정체성 탐구하고 타인의 정체성을 존중 및 화합할 수 있도록 학습의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모든 학생은 자신의 정체성을 사랑하고 타인의 정체성을 존중 및 화합할 수 있는 학습의 권리가 있으며, 이는 정규학습과정

에서 실현되어야 합니다.

둘째, 교사는 다양한 학생문제들에 대해 보호자와 상의를 하는 것이 당연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은 성소수자학생을 부모로부터 학대, 방임, 내어쫓김 등을 유발하여 학생의 안전에 위협이 되며, 자신의 내면의 고민을 교사와 상담하는 것에 대해 주저하게 되고, 교사를 신뢰하지 못하게 되는 요인이 됩니다. 따라서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에 관한 사적인 정보는 학생 본인의 동의없이 가족 및 어떤 타인에게도 공개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자살과 같은 위급상황 의심시에도 해당 학생에게 치료와 보호가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이해시킨 후 상담교사와 혹은 심리상담사에게 소개하고, 이들이 학생의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단계를 진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학생의 개인적 정보는 최소한 노출되도록 해야 하며 학생에게 이 사실에 대해서도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셋째, 모든 학생에게 건강권은 중요한 권리이며, 건강에는 신체적, 정신적 요소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소수자학생은 가정과 학교에서 지지를 받지 못하기에 그들의 정신적 스트레스는 다양한 신체증상과 우울, 자살등과 같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반해, 그들에 대한 진료와 상담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소수자학생이 자신의 성정체성을 밝혀도 위협받지 않고, 안전하고 편리하게 진료와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들을 마련해야 합니다.

넷째, 사회의 차별과 혐오 현실은 학교와 학생에게도 그대로 재현되고 있습니다. 모든 학생의 인권이 존중받기위해서,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등에 관련한 차별과 혐오를 반대하고 이들의 인권이 개선 및 존중되어야 함을 여러분은 깊이 이해할 것입니다. 따라서 다양한 소수자학생의 현실을 구체적으로 공감하고 정책수립 및 평가에 반영하기 위해서 보편적 인권전문가 외에도 해당소수자 인권전문가들이 학생인권심의위원회에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말하겠습니다. 인권은 누군가에게 옳고 그름 혹은 정의의 문제일 것입니다. 하지만 성소수자학생에게 인권이란 삶과 죽음의 문제일수 있다 라는 사실을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